

##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제외)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단)체로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②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 및 ‘제조사’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③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실적인정자료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당해연도 수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중복 지원 불가

### 2.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1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200,000천원 (정액 지원)	2025. 1. 1. ~ 2025. 11. 30.	수산정책과 (710-3296)

- (지원기간) 2025년 1월 1일까지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지원품목) 갈치,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이 주원료인 수산가공식품
- (지원내용) 지원기간(25.1.1.~11.30.) 동안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수출 선적된 상기 지원품목의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국외운송료 해당없음
- (지원단가) 수출용 수산물 1kg당 116원 지원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 기준 원칙  
※ 실적인정자료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지원한도) 업체 당 최대 30,000천원 범위내 지원  
※ 수출물량과 운송물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지원 제외함.

### 3. 배정기준 및 산출방법

- 배정기준: 최근 3년(2022~2024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 산출방법: 전체 적격업체 중 해당업체의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신청업체 수출실적별 구간을 설정하여 차등 지원

### 4. 지원 제외(물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025년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관련 동일사항에 대해 타기관(부서) 등에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이 경우 향후 3년간 수출관련 보조금 일체 지원 배제 조치예정
- 수출물량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 제출시
- 수출실적, 계약업체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산물 수출 물류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대행자와 제조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경우
- 수입국의 검역기준 등 수출규정 위반 등에 따라 반송·폐기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1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5.(수) ~ 2025. 2. 19.(수) \*15일간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2025. 2. 19.(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파일 별도 e-메일 송부(ksc5578@korea.kr)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서식 1, 2)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하여야 함.
- (2)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 (3) 회당 물류비 단가견적서 1부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 (4) 2024년 물류비 이용실적 (컨테이너 단위, 회당 이용료 내역 포함)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6) 수출업체 신고필증 사본 1부
- (7) 법인의 경우 단체소개서(서식 4) 및 정관 사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의사결정 회의록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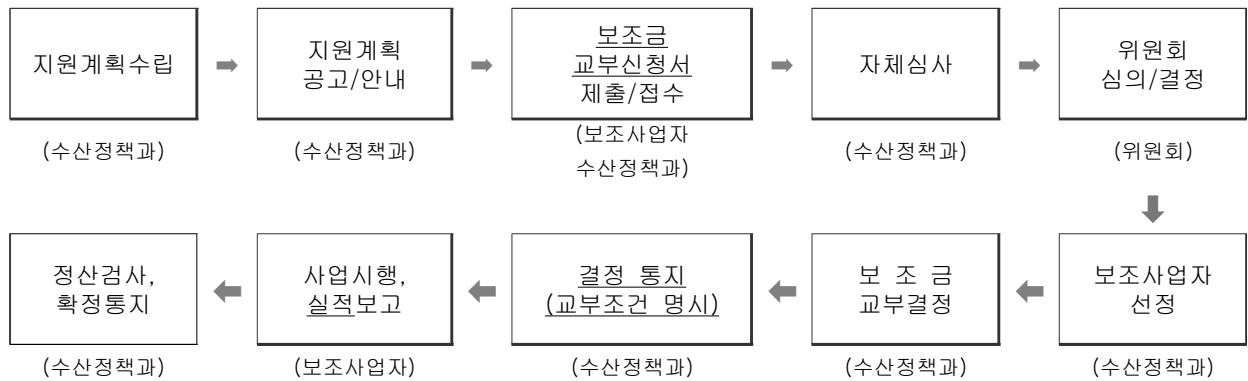
- (8) 수출실적증명서(서식5) 1부
- (9)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에 해당하는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기관이 발급한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
- (10)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서식 6) 1부
- (11)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7) 1부
- (12) 국세 및 지방세 납세확인서 1부

**※ 위 구비서류 미 제출시 신청 접수 불가**

**5.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지원 절차 흐름도**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96)**

## 〈 유 의 사 항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전화번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수출용 수산물 해상물류비 일부 지원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기타

5. 보조사업 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2. 31일까지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3]

#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2. 31일까지
- 사업내용 : 수출용 수산물 해상물류비 일부 지원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 보조금액 :            천원
-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산물류비 지원	운송비	0500	· 운송비 00천원× 0회 = 5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산물류비 지원	운송비	0500	· 운송비 00천원× 0회 = 500천원

<작성요령>

-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6]

##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

당사는 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를 신청함에 있어 수출후 검역기준 위반 등으로 반송 또는 현지 폐기 된 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반송되어 재수출 된 물량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수출 된 내역대로 사전에 재 정산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일, 상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 또는 정산요청 없이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고 귀 도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귀하

[서식7]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